

# 교원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상담 매뉴얼



 한국외국어대학교 성평등센터

# CONTENTS

## 01 성희롱, 성폭력 알아보기 \_ 04

1. 성희롱이란?
2. 성희롱의 유형
3. 성폭력이란?
4. 성폭력의 유형
5. 우리 학교 규정 살펴보기

## 02 데이트 폭력 알아보기 \_ 06

1. 데이트 폭력의 개념
2. 데이트 폭력의 예시
3. 상담 전 데이트 폭력에 대해 숙지하기

## 03 디지털 폭력의 개념과 대처방법 - 불법촬영, 단톡방 성희롱 \_ 08

1. 디지털 폭력의 개념
2. 디지털 폭력의 유형
3. 상담 전 디지털 폭력에 대해 숙지하기
4. 디지털 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

## 04 성폭력 통념깨기 \_ 10

1. 언어 등으로 행해지는 성희롱이 추행 등의 물리적 성폭력보다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2. 피해자는 동정의 대상, 평생 극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3.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는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 05 피해자 상담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_ 12

1. 비밀유지
2. 즉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일 때
3. 접근금지 및 공간분리 등

# 서로 존중하는 성평등한 대학 만들기 우리 모두 함께해요



## 06 피해자 상담 시 알아야 할 사항 \_ 14

1. 사건을 인지하였을 때
2. 피해자 상담
3. 다음과 같은 경우, 성평등센터로 안내해주세요

## 07 행위자 상담 시 알아야 할 사항 \_ 17

1. 행위자 상담

## 08 2차 피해의 개념과 예방 노력 \_ 19

1. 2차 피해의 개념
2. 피해자 유발론
3. 우리 학교 규정 살펴보기
4. 2차 피해의 예시
5.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

## 09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_ 21

1. 지원기관 : 성평등센터
2.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 10 외부기관을 통한 대응 및 지원기관 안내 \_ 24

1. 비시법적 권리구제
2. 시법적 권리구제
3. 주요 외부지원기관

## 11 A Brief Manual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_ 25

# 01

## 성희롱, 성폭력 알아보기

### 1. 성희롱이란?

-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그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 일반적으로는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2. 성희롱의 유형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의 행위를 말함
시각적 성희롱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등
육체적 성희롱	신체적 접촉,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을 말하지만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경우엔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사적 처벌의 범죄 유형으로 분류됨
기타 성희롱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접대를 해야 한다며 원치 않는 식사,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 등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등

### 3. 성폭력이란?

- ✓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며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성적 자기결정권: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를 거부할 권리,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은 권리

## 4. 성폭력의 유형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가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 시키는 행위
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준강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한 행위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가슴, 엉덩이, 성기부위 접촉, 키스, 음란한 행위, 피해자나 가해자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행위
디지털 성폭력	카메라 등의 이용촬영(불법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음란물 배포, 판매, 전시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스토킹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근, 접촉시도, 관심 표명을 계속해서 하는 행위

## 5. 우리 학교 규정 살펴보기

- 우리 학교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규정번호4-3-13)에서는 성희롱, 성폭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유형으로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다.
  - 성희롱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 관련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 02

## 데이트 폭력 알아보기

### 1. 데이트 폭력의 개념

- ❶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 데이트 관계: 좁게는 연인, 넓게는 소개팅, 부킹, 채팅 등을 통해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관계까지 포함하여 사귀는 것은 아니지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썸 타는 사이까지 포함됩니다.
- ❷ 데이트 폭력은 단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 데이트 폭력의 예시

통제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신체적	성적
누구와 있는지 항상 확인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	팔목이나 몸을 힘껏 쥐는 것	의사에 상관없이 가슴/엉덩이/성기를 만지는 것
옷차림을 제한하는 것	위협을 느낄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것	세게 밀치는 것	원하지 않는데 몸을 만지는 것
학원, 직장 등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는 것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라고 하는 것	팔을 비틀거나 머리채를 잡는 것	원하지 않는데 애무를 하는 것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것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비난하는 것	폭행으로 명/상처 등이 생기는 것	원하지 않는데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

### 3. 상담 전 데이트 폭력에 대해 숙지하기

- ✓ 데이트 폭력은 '사랑'이라는 감정과 행위, 관계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로 드러나기 어렵고 여전히 '사랑싸움'쯤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특히, 신체적 폭력 이외에 다른 피해를 폭력으로 인지하기 어려우며, 사랑을 명목으로 폭력이 은폐되고 이해받고 정당화되는 모습이 많습니다.
- ✓ 따라서 설부르게 '둘이 해결해야 한다'라는 말은 삼가야 합니다. 이는 곧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되곤 합니다.
- ✓ 대부분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사적인 일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나도 잘못이 있는건 아닌지' 하는 생각으로 자신이 폭력을 겪고 있음에도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 ✓ 따라서, 피해자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피해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 단순히 '그 친구가 이상한 것이다'라고 개인화 시키지 않고, '네가 겪고 있는 것이 폭력이고, 이건 정말 잘못된거다, 신고를 할 수 있고 너는 피해를 입고 있다' 라며 상황을 직시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03

## 디지털 폭력의 개념과 대처방법 - 불법촬영, 단톡방 성희롱

### 1. 디지털 폭력의 개념

- 카메라, 핸드폰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디지털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의 폭력을 의미합니다.

### 2. 디지털 폭력의 유형

유형	적용법률	예시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1항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것 성행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
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1항~3항	누드촬영물, 자위영상 등 성적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 동의 하에 촬영한 성적인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인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
재유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비동의 상태로 유포된 성행위 촬영물을 다운받고 다시 유포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주로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대량으로 다운 및 업로드 하여 유포
유포 협박	형법 제30장(협박) 제283조~제286조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 연인 간 이별 시, 이별 후 다른 연인을 만나거나 결혼 할 때 협박하는 것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 관련 촬영물을 주고받은 후 다른 촬영물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
디지털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형법 제311조(모욕)	원하지 않은 성적 언어 희롱과 음담패설 및 이미지를 전송하는 것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함께 게시하는 것 게임 내 성희롱 단톡방 내 성희롱

### 3. 상담 전 디지털 폭력에 대해 숙지하기

- ☑ 디지털 폭력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고 자신을 알아볼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이 가장 큰 폭력입니다. 피해자는 혼자 피해를 감당하거나 이겨내기 어려울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끊임없이 지지해주고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 피해촬영물이 유포가 되었을 경우, 촬영물을 신속히 찾아내 삭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주변인이 먼저 나서서 피해촬영물을 추적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누군가가 자신의 피해촬영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 ☑ 따라서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에 신속히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지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디지털 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

유형	대처방법
촬영	촬영을 인지한 즉시 경찰서에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위자의 휴대폰 기종, 인상착의 등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단서들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이동 중 불법촬영의 경우, 현행범으로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 현장 주변 인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포	게시물 링크, 원본 영상, 캡처본 등 유포된 피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를 모은 뒤 단면 인쇄해 지참 후 가해자의 관할 경찰서로 신고를 합니다. 삭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합니다. * 도움(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
유포 협박	협박 문자, 통화내용 녹취 등 가해 행위를 증거로 하여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박하는 촬영물 원본이 있다면 지참하여 경찰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을 경우 가해자 관할 경찰서로 신고합니다.
디지털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희롱 내용, 음란한 사진, 음담패설 등 가해 행위를 증거로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 내 성적 괴롭힘은 해당 디지털 공간 내 피해자의 유무와 관련 없이 성폭력이 인정됩니다.

# 04

## 성폭력 통념깨기

- 교수는 초기 면담자로서 피해자와 행위자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성희롱, 성폭력 문제 발생 시, 초기 면담자가 피해자와 행위자를 대하는 태도와 대처방식이 사건 처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나의 성폭력 통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잘못된 통념을 고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1. 언어 등으로 행해지는 성희롱이 추행 등의 물리적 성폭력보다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 ✓ 흔히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이 없는 성희롱은 성추행, 성폭행보다 가벼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고통은 성추행, 성폭행보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헤아리기 힘든 고통을 주는 성폭력으로 경중이 없습니다.
- ✓ 따라서 성희롱 피해자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별 것 아닌 일처럼 생각하며 피해자를 대해서는 안됩니다. 보이는 것보다 피해자의 고통은 훨씬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 2. 피해자는 동정의 대상, 평생 극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 ✓ 성희롱, 성폭력을 경험하면 심리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은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라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시선 때문에 더욱 가중됩니다. 적절한 개입과 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며 피해자를 혐한 일을 겪은 대상으로 불쌍하게 바라보는 대신, 피해자가 고립되지 않고 상황을 헤쳐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지자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또한 피해자는 소극적이고 조용하게 생활을 하기보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왜 이렇게 멀쩡해?’라는 생각을 버리고 피해자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3.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는 낫선 사람이 아닙니다.

- ✓ 낫선 사람이 가해자일 때도 있지만 동기, 선후배, 강사 등과 같이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 성희롱, 성폭력 가해자인 경우가 80% 이상을 차지 합니다. 그러나 미디어나 뉴스에서는 낫선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주로 보도하기 때문에 성폭력이 낫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가깝고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성폭력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대처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행위자가 내가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고 피해자가 내가 아는 사람을 지목하며 행위자임을 호소할 때, 행위자를 감싸거나 사건을 덮으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됩니다.



#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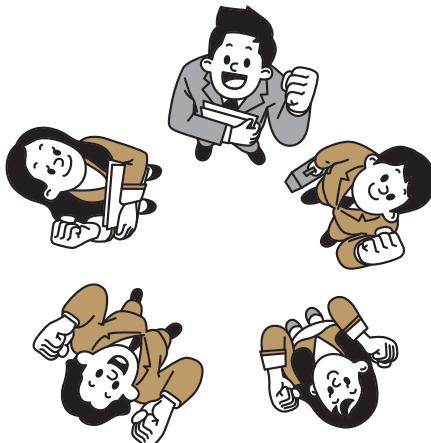
## 피해자 상담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비밀유지

- ✓ 사건 내용과 신상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사건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 ✓ 피해자가 이미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 했다면, 그 사람에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야기되는 것을 원치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행위자에게도 비밀유지 요청을 하겠다고 안내합니다.

### 2. 즉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일 때

- ✓ 가장 먼저 피해자가 성폭력으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치료 및 증거 채취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 ✓ 만약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해서 증거 채취 및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상담 + 수사 + 의료 + 법률 +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증거 채취를 바로 할 수 없는 경우, 우선 피해자를 심적으로 안정되게끔 도와 주고, 이후 증거 채취를 할 수 있도록 입은 옷, 물건 등을 종이 가방에 넣어 보관할 것을 당부해야 합니다.



### ✓ 서울, 경기 해바라기 센터 연락처

구분	위탁병원	소재지	연락처
서울 동부	경찰병원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 경찰병원 1층	02)3400-1700
서울 남부	보라매병원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보라매병원 희망관 2층	02)870-1700
서울 북부	삼육서울병원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82	02)3390-4145
서울 중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 중구 을지로 245	02)2266-8276
서울	서울대병원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함춘회관 지하1층	02)3472-0365
경기 북동부	의정부병원	경기 의정부시 흥선로 142 의정부의료원 본관 3층	031)874-3117
경기 북서부	명지병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5-1 우리프라자 5층	031)816-1375
경기 남부	아주대병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아주대학교 병원	031)215-1117
경기 서부	한도병원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86 한도병원 제2별과 2층	031)364-8117

### 3. 접근금지 및 공간분리 등

- ✓ 피해자에게 행위자와의 접근금지와 공간분리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이를 필요로 한다면, 행위자와 만나게 되는 상황, 장소 등을 확인하여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함께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 ✓ 수업, 동아리, 공동체의 행사 등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분리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적절한지 판단해보고, 가능하지 않다면 피해자와 함께 다시 상의해 보아야 합니다.
- ✓ 수업 등에서 분리를 위해 교수, 직원, 학생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이런 분리 조치를 위해 사건에 대한 정보가 알려질 수 있음을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하며, 사건에 대한 정보 역시 분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알리고, 비밀유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06

## 피해자 상담 시 알아야 할 사항

### 1. 사건을 인지하였을 때

#### ▣ 피해자가 자신을 밝혔을 때

메일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건해결을 위해 학교 공동체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안내, 교내 사건처리절차, 교내 담당기관(성평등센터, 글로벌법률상담소) 등에 대한 안내를 하며 피해자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제3자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을 때

피해 내용에 대해 제3자를 통해 알게 된 경우, 피해자는 자신이 사건의 피해자임을 교수자에게 알리기를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내용을 알려 준 제3자와 의논하여, 만약 피해자가 교수자가 아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교수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고, 위와 같은 상담 안내 내용을 제3자가 피해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언론, 인터넷, SNS 등을 통해(의명제보로)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사건이 공론화되어 알려진 경우, 교수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건처리 및 피해자 지원내용, 예상되는 2차 피해 유의사항(제3자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는 언행 및 피해자 신상노출 등)에 대하여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자를 찾아내 사건을 급하게 처리하려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 2. 피해자 상담

- 아래 내용에 대해 숙지가 어렵거나, 상담 진행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무리해서 상담을 진행하기보다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함을 충분히 설명한 후 교내외 기관으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Step1. 상담장소 정하기

- ▣ 우선 상담 약속을 잡을 때, 피해자에게 원하는 장소를 물어보고 상담 사실, 상담내용 등 비밀보장이 가능한(방음, 다른 학생 출입여부 등)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여 상담을 해야 합니다.

## Step2. 공감과 지지

- ✓ 피해자가 용기 내어 상담을 요청한 것을 격려하고 힘들었음에 대해 공감해주어야 합니다. 차마 믿을 수 없는 내용이라도 마음을 열어 경청하고 공감하고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그들의 힘을 믿고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해 실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 Step3. 피해자의 상태 확인하기

- ✓ 현재 피해자의 상태(건강, 대인관계, 학업 등)가 피해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것이 없는지, 행위자와의 공간분리 여부(같은 수업, 동아리 활동 등)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체크하고 도움 받기 원하는 것을 살펴보고 정리해야 합니다.
- ✓ 피해자의 현재 상태가 불안정해보이고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건의 해결보다 피해자 보호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여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Step4. 관련 기관 연계 필요성 확인하기

- ✓ 피해자가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적응을 어려워하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교내외 상담기관(교내 학생상담센터, 교외 상담기관인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등)을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임의적으로 연계를 해주기보다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도록 권하고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상담기관으로 연계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위치	연락처
(교내) 학생상담센터	(서울) 국제학사. 345호	02) 2173-2562
	(글로벌) 학생회관 219호	031) 330-4141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 마포구 성지1길 32-42	02) 338-5801
한국여성의전화	서울 은평구 진흥로 16길 8-4	02) 2263-6465
용인성폭력상담소	경기 용인 기흥구 갈곡로8번길 11	031) 281-1366
서울동부스마일센터	서울 송파구 풍성로22길 37	02) 473-1295
수원스마일센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8	031) 235-1295

## Step5. 사건 해결을 위한 안내하기

- ✓ 사건 처리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파악하고 사건 해결에 함께한다는 의지와 신뢰를 주고, 피해자가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처해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좋습니다.

- ☑ 모든 해결방안을 탐색해보고 그 상황을 하나씩 점검해보고 결정에 따른 결과와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본 후 스스로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학내 징계 등 공식적인 조치를 원할 경우 성평등센터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적합함을 설명해야 합니다. 단, 이때 임의로 판단하여 조치를 권고해서는 안 됩니다.
- ☑ 피해자의 요구와 필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줄 수 있는 도움의 한계를 인정하고 적절한 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 피해자가 당장 해결 방안을 결정하기 어려워한다면, 자신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건처리 및 구제절차(간략)

- 사법적 구제 : ① 형사고소, ② 민사손해배상청구
- 학내처리 : 교내 성평등센터에 ① 조정(중재) 요청 또는 ② 신고 후 학교 규정에 따른 사건처리
- 자율적해결 : 행위자에게 잘못 인정과 사과받기, 학생기구에 요청하여 공간 분리 등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행위자에게 요구하고 약속받기 등

### 3. 다음과 같은 경우, 성평등센터로 안내해주세요

피해자에게 성평등센터를 안내하고 상담을 받아보도록 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동의하면 ① 피해자가 직접 성평등센터에 연락하여 상담하게 하거나 ② 교수자가 성평등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의뢰 합니다.

- ☑ 사건처리 및 구제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주기 어려울 때
- ☑ 피해자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고 이에 대한 처리 및 대응방법(학내절차, 형사, 민사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기를 원할 때
- ☑ 피해자가 사건을 공론화시키길 원하거나, 공개사과 등을 원할 때
- ☑ 피해자에게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있을 때
- ☑ 피해자가 가해 행위자(교수, 상급자, 동료 등)에게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또는 보복을 두려워하여 신고하기 꺼려하거나 해결 방법 찾기를 어려워한다면, 성평등센터 상담연구원과의 논의를 통해 문제해결 대안을 모색해 보고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 07

## 행위자 상담 시 알아야 할 사항

### 1. 행위자 상담

- 아래 내용에 대해 숙지가 어렵거나, 상담 진행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무리해서 상담을 진행하기보다 행위자에게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함을 충분히 설명한 후 교내외 기관으로 연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Step1. 상담장소 정하기

- ✓ 피해자 상담과 마찬가지로, 행위자에게 원하는 장소를 물어보고 상담 사실, 상담내용 등 비밀 보장이 가능한(방음, 다른 학생 출입여부 등)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여 상담을 해야 합니다.

#### Step2. 상담의 목적 명확히 하기

- ✓ 행위자 상담은 피해자와의 화해도모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 피해자 보호, 추가적 인 피해자의 존재 여부 확인 등의 차원에서 즉각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함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 ✓ 행위자를 상담할 때 가해자라고 단정하는 태도를 보이며 공격적 태도를 보이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Step3.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지지(≠행위에 대한 지지)

- ✓ 행위자는 자신이 사건으로 인해 문제의 대상이 되었을 때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위자로 지목된 것만으로도 불안해하고 분노하는 상황에 있기 쉬우므로 일단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 ✓ 행위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인들에게 사건에 대해 해명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과정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 ✓ 행위자도 사건 해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있으므로 행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지지할 수는 있지만 행위 자체에 대한 지지를 해서는 안됩니다  
(예: 사건으로 인해 고민이 많아졌구나 학교 생활은 괜찮니?(O) / 그냥 한번 농담으로 이야기 했을 뿐이구나 당황스러웠겠구나(X))

-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소문유포 및 비난, 위협, 원치 않는 만남 강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 Step4. 중립자의 자세 유지하기

- 행위자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나 견해가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속단은 금물이며, 행위자에게 분노 또는 동정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양측의 주장과 사실확인 절차 등을 통해 사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행위자가 사실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 하길 원한다면 이런 적극적 태도를 고려하여 문제해결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 09

## 2차 피해의 개념과 예방 노력

- 모든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1. 2차 피해의 개념

- 성희롱,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일상과 학업, 대인관계 곤란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자가 주변인, 행위자의 말이나 소문, 기타 다른 방법 등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
-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들이 지지와 지원을 받아야 할 가족, 친구, 주변인 등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불신과 비난을 경험하고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경우
-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피해자가 비난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며, 사건으로 인한 직접적인 1차 피해보다도 2차 피해에서 받은 상처가 더욱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 2. 피해자 유발론

-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피해자가 빌미를 제공했다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편견 (예: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니? / 나오란다고 그 밤엔 왜 나갔니?)
-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을 겪은 후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내 말을 믿어줄까? 내가 잘못 한 것은 아닐까?' 등을 고민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민감해지면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 3. 우리 학교 규정 살펴보기

- 우리 학교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규정번호4-3-13)에서는 2차 피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2차 가해라 함은 당해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관련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기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 4. 2차 피해의 예시

행위자에 의한 2차 피해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사건 후 피해자에게 화를 내는 것</li><li>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li><li>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혐담하거나 피해자를 탓하는 것</li><li>지도교수 등에게 사건을 피해자보다 먼저 보고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설명하는 것</li><li>피해자가 원치않는데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사건 합의를 집요하게 요청하는 것</li><li>행위를 불인정하고 사과하지 않는 것</li><li>변명, 핑계, 거짓말, 억울한 감정을 토로하는 것</li><li>부분적인 사과만을 하는 것(~한 것은 인정하지만)</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것</li><li>사건에 대해 부적절한 질문이나 태도를 보이는 것</li><li>사건에 대해 설부르게 판단하는 것</li><li>사건 내용과 당사자의 개인 신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거나 SNS에 올리는 것</li><li>사건을 개인 간 갈등으로 보고 피해자와 행위자를 화해시키려 하는 것</li><li>피해자에게 사건을 덮으라고 종용하는 것</li><li>피해자에게 행위자를 용서하라고 강권하는 것</li><li>피해자의 평소 행실 등을 혐담하는 것</li><li>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것</li><li>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li></ul>

## 5.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

- ✓ 피해자의 이야기를 믿고 지지하고 신뢰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 사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소문을 내서는 안됩니다.
- ✓ 사건 당사자(피해자, 행위자)에게 2차 피해 방지가 중요함을 설명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주변인에게 비밀 유지 요청을 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자책감을 주는 말은 자제해야 합니다.
- ✓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편들지 않아야 하고, 사건을 덮으라고 종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사건 당사자들의 평소 행동, 학업 능력, 성격 등으로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 ✓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할 때에는 반드시 피해자에게 이야기해도 괜찮은지 미리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 ✓ 사건에 대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설불리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 ✓ 경험하지 않은 것, 모르는 것에 대한 인정과 겸손이 필요합니다.
- ✓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행위자와, 주변인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 ✓ 사건 당사자가 모두 같은 공동체에 있거나, 공동체 안에서 사건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예방교육, 집단상담 등의 방법이 있으며, 성평등센터와 의논하여 방법을 구체화 할 수 있습니다.



##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 1. 지원기관 : 성평등센터

#### ▣ 위치 및 연락처

- 1) 서울캠퍼스 : 학생회관(국제학사) 346호 / 02-2173-3526 / gec@hufs.ac.kr  
(이용시간 : 월~금 9:00~12:00, 13:00~17:00)
- 2) 글로벌캠퍼스 : 학생회관 201-1, 2호 / 031-330-4464 / gec2@hufs.ac.kr  
(이용시간 : 월~금 9:30~12:00, 13:00~17:30)
- 3) 홈페이지(공통) : <http://gec.hufs.ac.kr>

#### ▣ 피해상담 및 신고방법

- 1) 방문신청 : 신청서 작성 – 시간예약 – 센터방문 – 상담개시
- 2) 전화신청 : 시간예약 – 센터방문 – 신청서 작성 – 상담개시
- 3) 이메일신청 : 서울캠퍼스 gec@hufs.ac.kr  
글로벌캠퍼스 gec2@hufs.ac.kr  
– 시간예약(센터에서 연락) - 센터방문 – 상담개시
- 4) 온라인상담/신고 : 성평등센터 홈페이지(<http://gec.hufs.ac.kr>) – 상담/신고 – 신청방법  
– 온라인상담(신고)신청

### 2.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 ① 상담 (\* 개인정보와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함)

- 내담자(피해자)는 상담연구원과 예약일정에 상담을 하게 되며, 상담연구원으로부터 사건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심리적·법률적·의료적 지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센터는 상담을 통해 피해사실에 대하여 경청하고 내담자(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 ② 신고/접수

- 사건 신고는 상담 후 내담자(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며, 조사를 원하는 경우 센터를 방문하여 사건 신고서를 서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서명날인 후 제출).

- 신고서 제출 이후 내담자(피해자)는 신고인이 되며, 신고인 측의 서면진술서, 증빙자료 등이 제출되면 신고한 것(신고일)으로 보는데, 이 신고일은 사건접수 후 심의까지의 기간을 세는 기산점이 됩니다.

#### ③ 조사

- 조사는 상담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조사 시 피해자, 가해 행위자, 제3자를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문답요구, 사건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④ 조정(중재)

- 당사자 간 조정(중재)처리에 대한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때 피해자와 행위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조사과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조사위원회가 반드시 개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조정(중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이며, 조정(사과문, 재발방지서약, 접근금지 등)을 통해 징계, 사법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원만한 갈등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⑤ 조사위원회 소집 및 심의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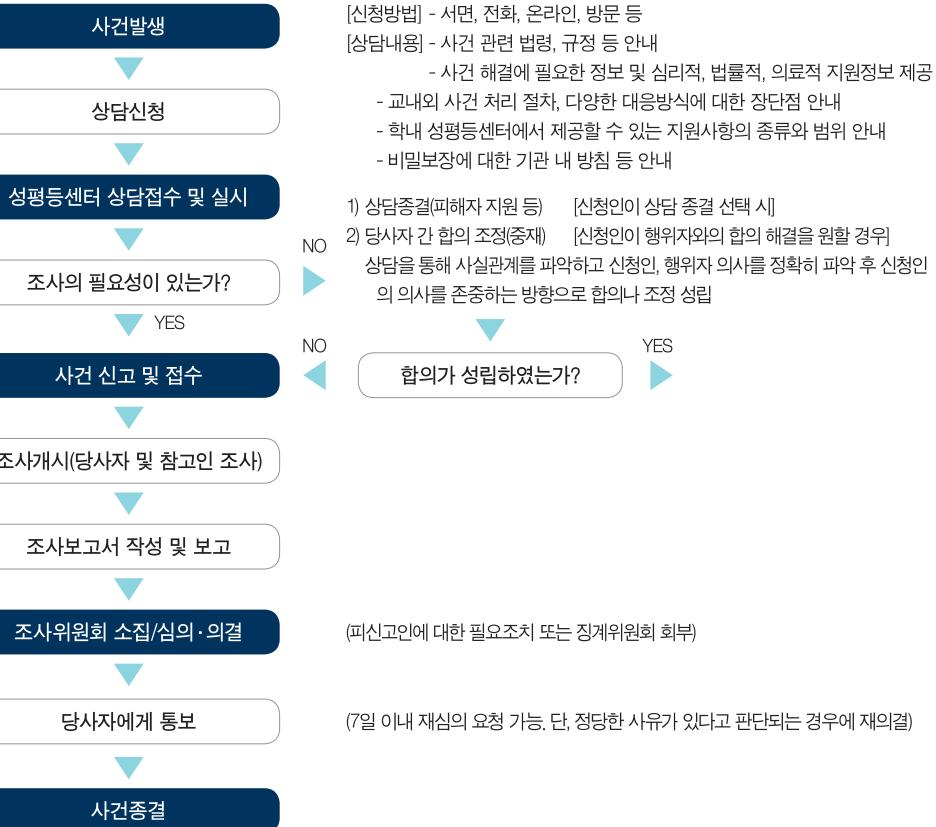
-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주장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정(중재)이 결렬되는 경우, 심각하고 상습적인 피해로 인해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 조사위원회 회의에 사건 당사자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 ⑥ 조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조치

- 사건이 성폭력으로 의결되어 징계가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해당 징계권자에게 피신고인(가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합니다. 조사위원회는 필요 시, 피신고인에게 재발방지교육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교내시설 및 서비스 이용 제한 명령 등의 필요조치를 부가할 수 있습니다.

#### ⑦ 결정사항 통지

- 성평등센터에서는 사건당사자에게 조사위원회의 결정 및 조치에 대해서 통지합니다.
-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건당사자는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단,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의결 검토)



# 10

## 외부기관을 통한 대응 및 지원기관 안내

### 1. 비사법적 권리구제

-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국번없이 1331
- ✓ 고용노동부를 통한 구제(고용관계) : 국번없이 1350
  - \* 익명신고도 가능 : <https://www.moel.go.kr/policyinfo/sexual/regist.do?>
- ✓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 <http://bit.ly/2FAOjfZ>

### 2. 사법적 권리구제

- ✓ 형사고소·신고 : 경찰수사-검찰수사-공판(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 ✓ 민사소송 : 변호사 선임-손해배상 청구 소송제기-공판절차

### 3. 주요 외부지원기관

#### ▣ 긴급전화

- 1) 여성긴급전화 : 국번없이 1366(24시간 365일 운영 / 구조, 보호, 상담 등)
- 2) 범죄신고 : 112

#### ▣ 성폭력 상담기관 : 위기 및 지속 상담, 무료법률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 신문 시 동행 / 의료기관 및 지역 내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 1) 한국성폭력상담소 : ☎02-338-5801~1, <http://www.sisters.or.kr>
- 2)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02-739-1858, <http://womenlink.or.kr>
- 3)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 ☎02-2263-6465, <http://sv.hotline.or.kr>
- 4) 한국여성상담센터 : ☎02-953-1504, <http://www.iffeminist.or.kr>

#### ▣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동대문구)

- 1)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 동대문구 왕산로 180, ☎02-958-2319
- 2) 동대문구보건소 : 동대문구 무학로 124, ☎02-920-9204
- 3) 시립동부병원 :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02-2127-5365

# 1 1

## A Brief Manual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 ✓ Report sexual harassment damage and case processing on camp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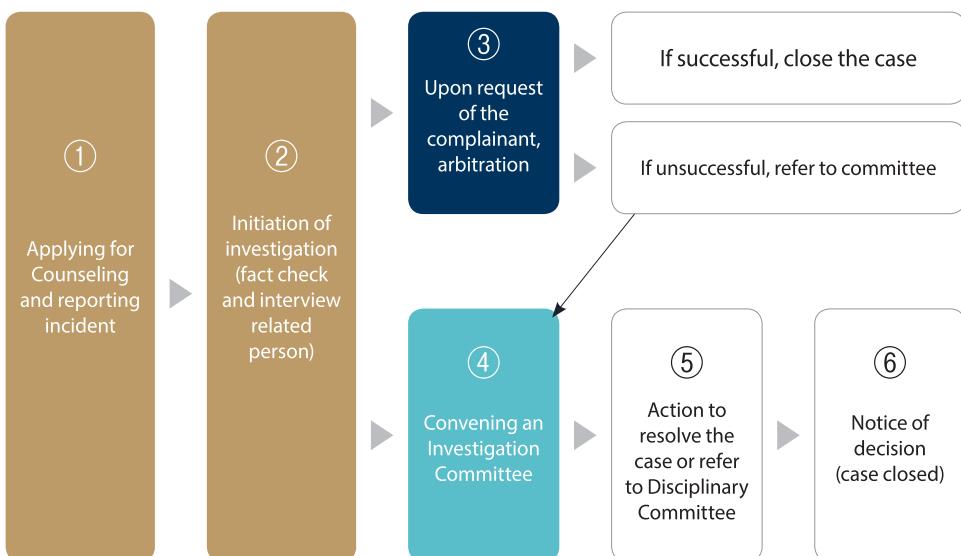
#### 1. Organization : Gender Equality Center

##### 1) What we do

- ① Provide supportive counseling services for the complainants of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 ② Receive and process reports from complainants of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 ③ Educate and advertise for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 2) Location and Contact

- ① Location - Seoul Campus : Student Hall and GlobbeeDorm 346, 347 / 02-2173-3526
  - Global Campus : Student Hall 201-1, 2 / 031-330-4464
- ② Homepage : <http://gec.hufs.c.kr>
- ③ E-mail : gec@hufs.ac.kr / gec2@hufs.ac.kr(global)
- ④ Hours : (Seoul Campus) Monday~Friday 9 AM~ 5 PM  
(Global Campus) Monday~Friday 9:30 AM~ 5:30 PM



## ▣ The concept of sexual harassment · sexual violence

### 1. Sexual Harassment

- 1) Regardless of the constitution of sexual offense, sexual harassment is an act that causes shame or disgust, and its standards are based on the rational and subjective judgment of the victim. Sexual harassment includes sexual behaviors and requests that the other person disagrees with, and acts that violate one's sexual autonomy through verbal, mental, and physical acts.
- 2) Sexual harassment within a university means that professors, faculty members, or students in an education, work, employment, or other relationships make the other person feel sexual humiliation or disgust using their status. And this also means giving the person disadvantages of education or employment for reasons of refusal to sexual behaviors or other demands.

### 2. Sexual Violence

Sexual violence refers to any physical, linguistic, or mental violence that is committed against the right of sexual self-determination, such as rape, forced harassment, verbal sexual harassment, candid shot.

### 3.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 1) The Criminal Law
- 2)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s Protection Act
- 3) Sexual Equality Employment Act
- 4)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Article 2, Section 2
- 5) Basic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3

## 4. The Criteria of sexual harassment

### 1) Judge whether sexual harassment

① When judging sexual harassment,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subjective circumstances of the victim, but if a rational person is a victim based on social common no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judge and respond to the behavior that is problematic. As a result, it should be examined whether it will reduce the efficiency of work and learning by forming hostile and threatening environment.

### 2) Subjective perspective of the victim

① Based on the victim's point of view, judge whether or not the victim wanted the action. At this time, motives and intentions of actor are not important.  
② Even if the action was a expression of intimacy, sexual harassment could be considered if the other person felt sexual humiliation or disgust.

### 3) Other considerations

① Sexual harassment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e repetitive or continuous, and only one sexual behavior can be judged by sexual harassment.  
② Even if the victim does not express the intention of denial, it can be considered sexual harassment if it is judged by objective circumstances that it is not actually wanted.

## ❸ Preventive Measures

### 1. As an individual

- 1) Remember that sometimes the other party may not express discomfort even if they do not like it
- 2) Bear in mind that many sexual assaults may occur when self-control was weakened due to factors such as drunkenness
- 3) Check yourself that your actions or habits do not cause sexual shame or insult to the other party
- 4) The body is part of the dignity of another person. Thus, have respect for the self-determination of others
- 5) Remember silence is not consent, and accept refusal even though it may be expressed indirectly

### 2. As the director of a Group

- 1) Educate thoroughly about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prevention in advance
- 2) If somebody gets drunk during a MT or drinking together, designate a person to safely care for that person
- 3) Ensure that excessive physical contact or making unreasonable demands do not occur in order to lighten the mood of the gathering

## ✓ If Sexual Violence has occurred

1. Avoid the thought that “it was my mistake”
2. Notify your acquaintances or professional organization(HUFS Gender Equality Center,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ect.) of the incident and seek for help
  - 1) On campus: Gender Equality Center  
(Seoul : 02-2173-2559, Global : 031-330-4466)
  - 2) Off campus :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02-338-2890), ect.
3. Record all the details of the incident and collect evidence
4. Be aware of emotional changes caused by the damage and consider the desired solutions
5. In urgent crisis situations, immediately call the police and go to medical institutions
  - 1) If it is difficult to cope with the crisis such as rape, serious sexual harassment, or assault, immediately contact the police(112) or a Female Emergency Number(1366).
  - 2) If evidence of sexual violence is needed, contact local Sunflower Center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02-3672-0365 / north of Seoul: Sahmyook Medical Center 02-3390-4145) without washing own body. And keep clothes and evidence in a paper bag

## ✓ In the case that I witness a sexual assault

1. Do not spread ridiculous comments or biased rumors about the case
2. Avoid secondary assault by trying to cover up the case or criticizing the victim
3. Recognize that the concerned parties' personality and sexual harassment are separate issues
4. Recognize and support that courageous problem-awareness or intervention i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a mature community culture

## ▣ Response through external organization and supporting organization

### 1. Non-judicial rights relief

- 1)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1331
- 2)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employment relationship) : 1350
  - \* Anonymous reporting is available :
  - <https://www.moel.go.kr/policyinfo/sexual/regist.do?>
- 3) Online Report Center of Ministry of Education : <http://bit.ly/2FAOjfZ>

### 2. External support organization

#### 1) Emergency call

- ① Female Emergency Number : **1366**  
(open 24 hours a day, 365 days a year / rescue, protection, consultation, etc)
- ② Crime report : **112**

#### 2) Sunflower Center(Seoul) : 365 days and 24 hours consultation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 Medical, legal, investigative sup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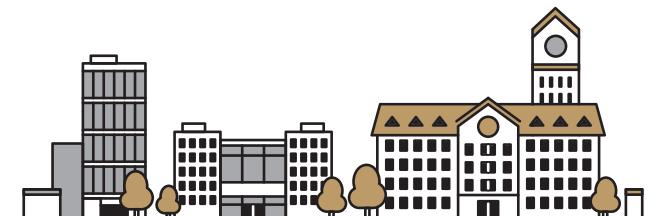
- ①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 02-3672-0365
- ② National Police Hospital : 02-3400-1117
- ③ Seoul National University Boramae Medical Center : 02-870-1700
- ④ Sahmyook Medical Center : 02-3390-4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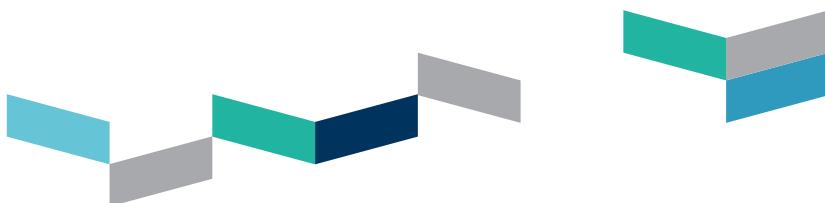
#### 3) Sexual violence counseling organization : Crisis counseling and continuous counseling, Free legal support / Accompany when there are investigations by investigative agencies and examinations of a witness in the court / Linked to medical institutions and local victim protection facilities

- ①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 02-338-5801~1, <http://www.sisters.or.kr>
- ② Korean WomenLink : 02-739-1858, <http://womenlink.or.kr>
- ③ Korea Women's Hot Line : 02-2263-6465, <http://sv.hotline.or.kr>
- ④ Korean Feminist Counseling Center : 02-953-1504, <http://www.iffeminist.or.kr>

### 〈참고문헌〉

- 교육부(2018).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황별 대응 매뉴얼 개발 정책연구  
서강대학교 성평등상담실(2016). 성희롱·성폭력 없는 서강캠퍼스  
여성가족부(2018).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이화여자대학교 양성평등센터(2016). 성평등한 이화 함께 만들어가요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성폭력위기센터·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2014).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안내서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2017).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한양대학교 양성평등센터(2017). 함께 만드는 성평등 캠퍼스(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자료)(영문)





## 한국외국어대학교 성평등센터

서울캠퍼스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TEL 02-2173-3526

홈페이지 <http://gec.hufs.ac.kr>

E-mail gec@hufs.ac.kr

글로벌캠퍼스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TEL 031-330-4464

홈페이지 <http://gec.hufs.ac.kr>

E-mail gec2@hufs.ac.kr